

보도시점 2024. 7. 3.(수) 11:00 7. 4.(목) 조간

배포 2024. 7. 3.(수) 09:00

휴가철,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(7.8~8.9.)

- 휴가철 수요 확대, 수입 증가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축산물 집중 점검 -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박성우, 이하 농관원)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,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.

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*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 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·유통업체, 식육가공품 제조 업체, 유명 피서(관광)지의 축산물판매장, 음식점, 푸드트럭,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(즉석식품 판매점)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
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, 원산지를 혼동·위장판매하는 행위, 음식점에서 육우·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,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.

* 수입량: 돼지고기 ('23) 514 천 톤→ ('24.5.) 268 / 쇠고기 ('23) 472 천 톤→ ('24.5.) 213 / 오리고기(훈제) ('23) 9.8 천 톤→ ('24.5.) 4.9

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(6.24.)를 실시하여 축산물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,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.

* (돼지고기)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, 항체분석 (쇠고기) 유전지분석 (닭고기, 오리고기) 이호학 분석

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(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 하고,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(1천만 원 이하)를 부과한다.

박성우 농관원장은 "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*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"하고 있다고 말하며,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(☎ 1588-8112)해 줄 것"을 당부하였다.

* 농관원 누리집(www.naqs.go.kr) → 업무소개 → 원산지관리 → 원산지 식별정보 붙임 돼지고기, 쇠고기, 오리고기 원산지 식별 정보

담당 부서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	책임자	과 장	이남윤 (054-429-4151)
	원산지관리과	담당자	사무관	이재필 (054-429-4156)







붙임

돼지고기, 쇠고기, 오리고기 원산지 식별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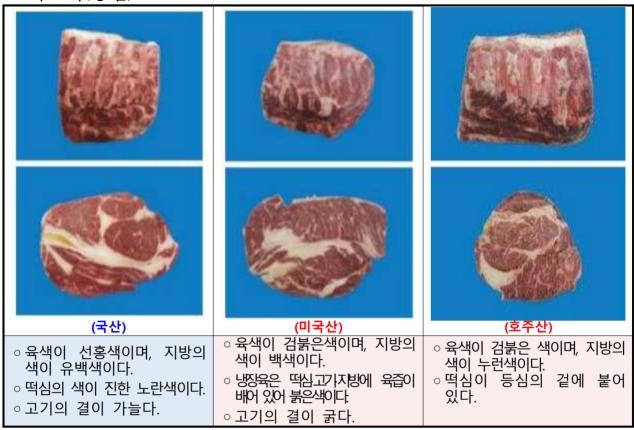
1. 돼지고기(삼겹살, 냉동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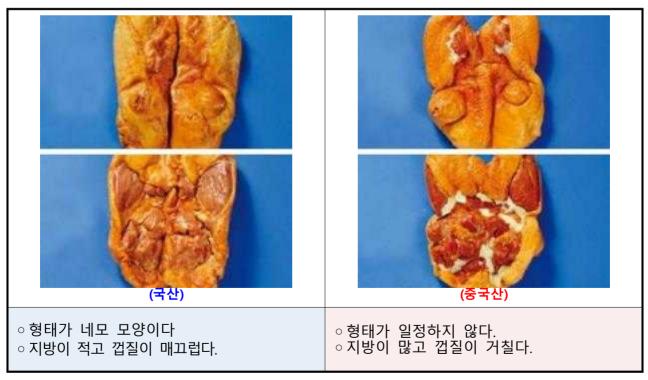
2. 돼지고기(목심, 냉동)



3. 쇠고기(등심)



4. 오리고기(훈제)



※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(www.naqs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(접속 경로: 누리집 → 업무소개 → 원산지관리 → 원산지 식별정보)